

전주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12. 21.)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공실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12.21(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전라북도 권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을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 적용배제, 단독세대주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본 모집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나, 경쟁 시 [6. 입주자 선정기준 등(5p)]을 따릅니다.
- 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2+2년)**하나,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동일 공고문내 2개의 단지가 있는 경우(A1단지, A2단지) 그 중 한 개 단지의 한 개 공급형을 선택하여 신청)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소	
전주평화1	전주평화1 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번지	063-285-6946
전주효자4-3	전주효자4-3 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063-225-6910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주택 유형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전주평화1	영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6개동 1,650호	1991.10.
전주효자 4-3	국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효자휴먼시아 3단지	7개동 691호	2007.11.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12. 공통 유의사항-지구 및 단지특성'(11p)]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 유형	공급평형 (㎡)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모집 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전주평화1	영구	26	26.37	13.48	-	39.8500	복도식/중앙	1,470	42	
전주효자4-3	국민	46	46.90	21.6708	10.2621	78.8300	복도식/개별	330	1	

- 금회 모집은 **모집호수만큼 입주자를 선정**하며, 미달된 호수가 있을 경우 추후 재공급 예정입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주택 유형	공급 평형 (㎡)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전주평화1	영구	26.37	생계·의료급여수급	2,369,000	473,000	1,896,000	47,120	-	-	-
			일반 신청자	32,032,000	3,203,000	28,829,000	16,520	(-) 28,000,000	4,032,000	74,850
전주효자 4-3	국민	46.90	신청자 전체	85,122,000	8,512,000	76,610,000	30,680	(-) 76,000,000	9,122,000	189,010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주평화1	'21.01.18(월) 10:00~	'21.01.21(목) (13:00 이후)	'21.01.22(금) ~ '21.01.26(화) (토,일 제외)	'21.03.05(금) (17:00 이후)	'21.03.17(수) ~ '21.03.19(금) (10:00~16:00)
전주효자4-3	'21.01.20.(수) 17: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모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방문 신청 가능하오며, 자세한 내용은 [7.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현황 게시) 주택단지별 접수현황은 신청접수 마감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전라북도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사람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p>무주택</p>	<p>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p> <p>※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구성원</p>	<p>■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231 728 1436 1131"> <thead> <tr> <th>세대구성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p>■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31 1198 1436 1512"> <tbody> <tr> <td>외국인 배우자</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 </tr> <tr> <td>외국인 직계존·비속</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 </tr> <tr> <td>태아</td> <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 </tr> </tbody> </table> <p>■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p> <p>■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p> <p>■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p> <p>■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p> <p>※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p> <p>■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p>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6. 입주자선정기준 등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는 아래의 선정순서를 따름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장애인	선정 순서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소득 기준(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1,322,574원 이하	1,851,603원 이하	2,645,147원 이하
2인	2,189,905원 이하	3,065,866원 이하	4,379,809원 이하
3인	2,813,449원 이하	3,938,828원 이하	5,626,897원 이하
4인	3,113,171원 이하	4,358,439원 이하	6,226,342원 이하
5인	3,469,177원 이하	4,856,848원 이하	6,938,354원 이하
6인	3,797,042원 이하	5,315,858원 이하	7,594,083원 이하
7인	4,124,906원 이하	5,774,868원 이하	8,249,812원 이하
8인	4,452,771원 이하	6,233,879원 이하	8,905,541원 이하

■ 소득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거나 신청 정보와 달라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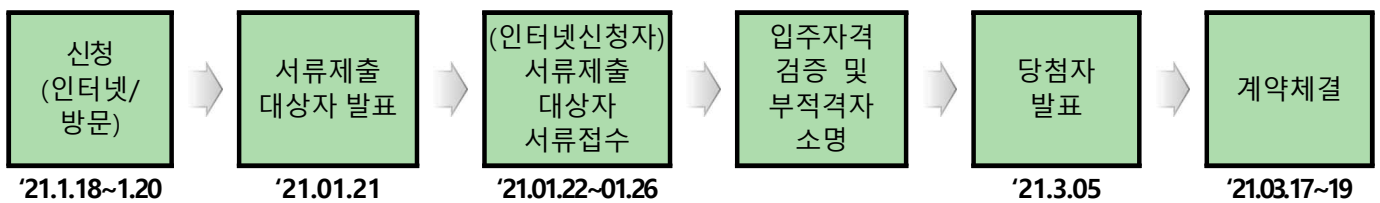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7.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5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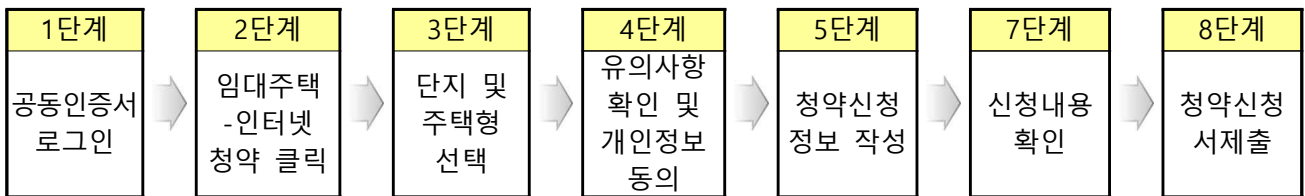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주)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동인증서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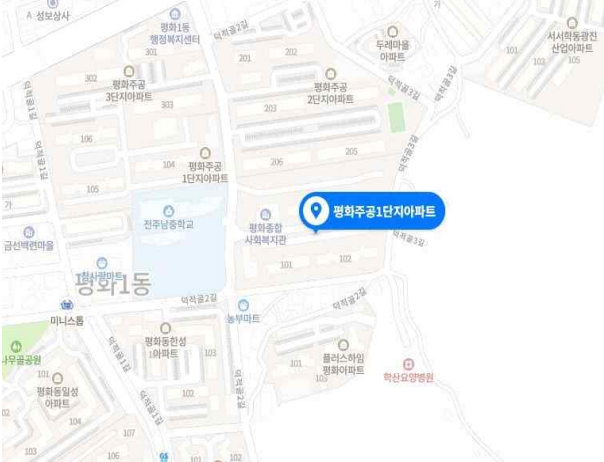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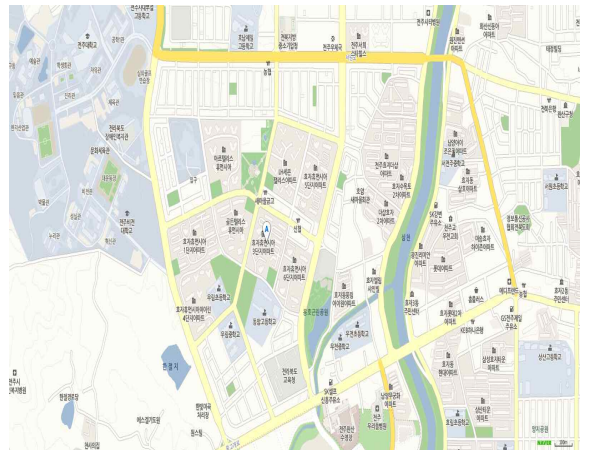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방문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신청서류] 참조)
- 접수기간 : '21. 1. 18(월)~1. 20(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장소 (주택단지별로 방문 신청 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전주평화1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주효자4-3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5 (평화동 1가 445-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효자동2가 1201-2번지)
교통편	54,55,56,57,58,60,101,109,119,142,165,190,201,202,350,375,380,470,473,474,475,479,487,508,536,542,545,546,806,817,871,872,944,946,947,970,971,973,974,976,977,5-2번 버스 평화주공1,2단지정류장 하차 (전주평화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61번 버스 승차 휴먼시아 3단지 옆 하차(전주효자휴먼시아4-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약 도		
해당 주택단지	전주평화1 단지	전주효자4-3 단지

8.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12.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신청서류중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서류가 허위·위조·변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서류제출기간에**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1.01.22(금) ~ 01.26(화) (토, 일 제외)**

- 서류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전주평화1 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전골2길 25
 - 전주효자4-3 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 등기우편은 '21.01.26(화) 소인 분까지 인정'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2호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신청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수급 증빙이 필요한 경우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통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70% 이하자로 장애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1통
예비신혼부부 공동신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각 1통 (별지2호 서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당첨자 발표 (2021.03.05. (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방문 계약

단지명	계약체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장소	비고
전주평화1	'21.03.17(수) 10:00~	'21.03.17(수) ~ '21.04.19(월)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이내에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 가능	전주평화1 관리사무소	본 모집은 전자계약 불가
전주효자4-3	'21.03.19(금) 16:00		전주효자-4-3 관리사무소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계약 일시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함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전체가 세트로 연결된 UBR 욕실은 일부 항목 이외 설치 불가)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주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싱크대(물버림대)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등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주동·통로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립식 욕실(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계약장소 비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사본)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11.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청약신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갱신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갱신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갱신계약 시 소득수준 변경(소득 100% 초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시설이용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내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단지 특성은 관리사무소 문의 및 단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전주평화1 104동, 전주효자4-3 302동 옥상층에 설치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는 2차로이며 전주효자4-3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2.7m입니다.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

- 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